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성매매는 '성착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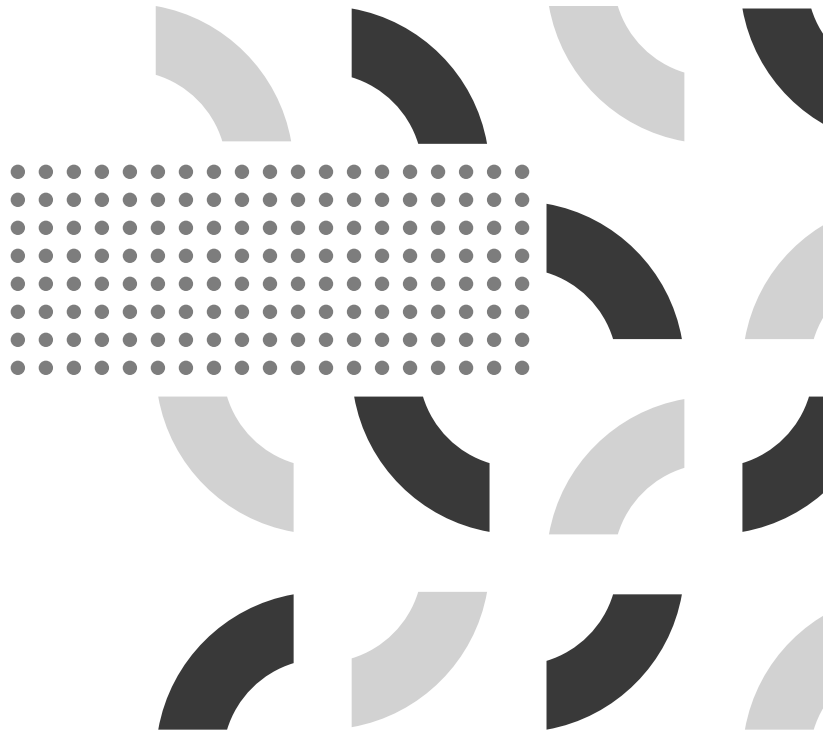


주 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공동주최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성매매는 '성착취'다.”



주 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공동주최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는 ‘성착취’다.”

일시 | 2023. 12. 14. 목 14:00 ~ 16:3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2020. 11. 20.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되어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아청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기존의 관행대로 아동·청소년을 소년부 송치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선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부처, 지원기관이 어떻게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12. 4.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사회 | 최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

시 간	내 용
14:00 - 14:20	인사말 *좌장: 김병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소도)
14:20 - 14:40	주제발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는 성착취다’ • 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14:40 - 15:20	발제 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전제로 • 추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토론 1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토론 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예정)
휴식 15:20 - 15:30	
15:30 - 15:50	발제 2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방안 • 한옥 변호사(법무법인 일원)
15:50 - 16:10	토론 1 김잔디 교수(우석대학교 경찰학과) 토론 2 김도현 경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10 - 16:30	

공동주최 |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주 관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관련문의 |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변호사 ☎02-6348-1318

상세주소 | 클릭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5호선 광화문역 8번출구 앞)

CONTENTS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성매매는 ‘성착취’다”

인사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
서순성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5
황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7
권인숙 국회의원	9
용혜인 국회의원	11
윤미향 국회의원	13
장혜영 국회의원	15

주제발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는 성착취다.’

김수현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19
--------------------------	----

발제 1

발 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전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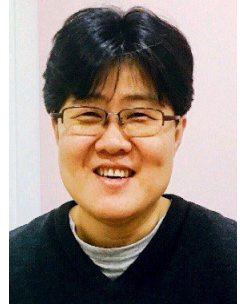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45
-------------------------	----

토 론 1 조윤희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토 론 2 이정애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발제 2

발 제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방안 한 욱 변호사 (법무법인 일현)	79
토 론 1	김잔디 교수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97
토 론 2	김도현 경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101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09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성매매는 ‘성착취’다” 라는 주제로 법률지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2년 설립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자발/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성착취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성착취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은 ‘성매매’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행위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내포하고 있고, 성매매 용어 자체에 자발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범죄는 강제와 자발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나 범죄의 성격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 두 당사자가 대가를 약속하고 성을 거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입니까? 우선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인적 관계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성인이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법적 권리조차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열릴 경우,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송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비해 열등하게 보거나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아직 성장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동·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권 행사의 한시적 제한입니다. 그것은 다시 책임 부분에서도 같은 이유로 성인에게 책임을 묻고, 아동·청소년은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적 권리가 제한된다면, 법적 책임에서 또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엄격히 분리하여 보아왔습니다. 마치 두 피해가 전혀 다른 것처럼, 한 피해는 무고한 아동·청소년이 강제로 당한 끔찍한 피해이고, 다른 한 피해는 비행으로 몰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위의 대상이 된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서는 성폭력피해와 성매매피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성폭력한 성범죄자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당하기도 하고, 성매수자나 알선업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바로 직전에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인 성착취 범죄자로부터 그루밍되어 성폭력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가출하고 떠돌다가 성매매의 대상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 아이에게서 어떻게 성폭력 피해와 성매매 피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법률적으로는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에 아동·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둘 다 처벌해야 하나,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의해 처분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의 심각성은 보이지 않게 만들고 대신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이나 책임성만을 문제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낙인일 뿐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으로 유인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착취가 아닌 거래라고 말하고 싶어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고 싶겠지만, 그 대가라는 것 자체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미끼인 것입니다. 성매매는 성착취의 한 수법일 뿐입니다.

이제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겨우 ‘아청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강제 구별 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우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난과 낙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지만, 그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절망스러운 정도로 가혹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법 개정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현장에서 변화를 촉구하며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수자와 알선업자, 성착취영상제작강요 성착취 범죄자, 사진/영상 유포, 협박 성착취 가해자, 성착취영상 판매, 구매, 시청, 소지 성착취 범죄자, 성착취 목적 성적대화 성착취자들을 상대로 단호하게 맞서왔습니다. 더 나아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제대로 수사/기소/판결하지 못한 검·경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정 ‘아청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토론회 준비팀 소모임 변호사님들(김병희, 이기연, 김수현 변호사)이 주관하여 “성매매는 ‘성착취’다.”는 제목으로 법률지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를 성착취로 용어변경하고 글자로만 존재하는 듯한 위장/합정수사 규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10년을 통해 ‘아청법’ 개정을 이룬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앞으로의 또다른 10년 또한 개정된 ‘아청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곳곳하게 버틸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권인숙 국회의원님, 윤미향 국회의원님, 장혜영 국회의원님, 용혜인 국회의원님,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소를 제공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여년동안 꾸준히 법률지원단을 이끌어주신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단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최은미 변호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병희 변호사님, 주제발표와 발제1, 발제2를 맡아주신 김수현 변호사님, 추선희 변호사님, 한옥 변호사님께 깊은 신뢰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을 해주신 조윤희 변호사님과 김잔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님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도현 경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센터의 상담원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실 모든 참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안녕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변호사입니다.

2023. 12. 5. 포스코센터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준비되던 2012년 겨울 즈음에는 십대청소년 성착취·성폭력 문제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져가던 시절이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사법을 관장하는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입법부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해결할 의지도 없었고, 심지어 의제로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조진경 대표님이 찾아와 ‘십대청소년들의 성착취 문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도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법률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만들 생각인데, 법률지원단을 맡아 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출발할 당시에는 조진경대표님과 십대청소년의 성착취·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몇몇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아름 아름 모였으나, 2014년 이후로는 매년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고를 하여, 십대청소년의 성착취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신진변호사님을 모집하였고, 현재는 약 50여명의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은 몇십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변호사님들입니다. 월급 주는 로펌도 아닌데, 과장 아니냐고, 다들 의아해 하시겠지만, 나현이 사건 등

끔찍한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님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매년 법률지원단 신입변호사 모집 공고를 낼 때 마다, 백 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지원자들 중에서 '십대청소년의 성착취' 문제에 전문성, 관심, 열정을 갖고 있는 몇분만 엄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십대청소년의 성착취' 문제에 전문성, 관심, 열정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계셨기에 2020. 11.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십대청소년의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왔고,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0. 11. 20. 국회에서 통과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지난한 고통의 과정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자료집에 알알이 박혀있으니, 그것으로 같음합니다.

이제 이렇듯 각고의 노력 끝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처벌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어엿 3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성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은 갈수록 악랄하고 교묘해지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의제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낙수가 바위를 뚫어내듯 입법을 이루어 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개정 법률에 기초해,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겁니다.

지난 10여년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과 함께하신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님과 여러 선생님들, 무엇보다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늘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서 순 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황준협**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별하던 것을 자발·강제의 구별 없이 전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도록 아청법이 개정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보아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교육이나 인식개선이 절실히 보입니다. 또한 아청법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광고’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사례는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수사 관행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아청법상의 위장수사 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청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해결책 모색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든든한 벗과 조력자로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설립 1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황준협**



국회의원 권인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입니다.

오늘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성매매는 성착취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회의 장을 열어주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용혜인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애써주신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온라인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SNS, 채팅앱,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더욱 복잡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전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제가 1호로 발의한 온라인그루밍 수사과 처벌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위장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법 개정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여전히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처벌과 훈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으며, 심지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기존의 관행대로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선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 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올해까지 800명이 검거되었지만 온라인 그루밍으로 통용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아청법상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위장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이 성인인 이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발생해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그루밍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성인의 성착취 범죄임을 알리며,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위장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법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성착취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 개정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 피해자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루밍처벌법에 의해 검거된 사건은 25건에 불과합니다. 위장수사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뿐더러,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도 적용되기 어려워 사각지대가 큼니다.

'n번방' 방지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성착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제21대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를 돌아보고, 위장수사 강화 등 성착취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들의 성적 욕망을 존중하고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비롯한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예방과 근절에 힘쓰는 이번 토론회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힘쓰고 계신 십대여성인권센터에 꾸준한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아동·청소년의 존엄을 지키고, 성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의원 **용 혜 인**



국회의원 윤미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들의 든든한 조력자!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오늘 “성매매는 성착취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권인숙, 용혜인, 장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현장에서 땀 흘려 활동하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과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순성 법률지원단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 주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김수현·추선희·한옥 변호사님,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 우석대학교 김잔디 교수님께도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오랜 노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성매매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범죄 가담자 및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로 유입되는 아동·청소년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영업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5.8세로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가출 후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이 주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빈곤과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비난하고 정작 성매수자의 심각한 범죄사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성매매’라는 용어가 상호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과 아동·청소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국가들도 점차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매매를 성착취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가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디지털 발달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구조적 변화에 따라,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피해·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하여 이를 대응하는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시장의 몸집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장 수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성착취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사회의 성착취 개념의 재정립이 조속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쉽게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면밀히 살펴, 성매매가 아동·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정책을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달려온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설립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 지원과 성인권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반가운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성매매는 빈곤과 불평등을 볼모 삼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착취'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을 자유의지로 포장한 '학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호는커녕 일탈 행동을 한 문제아, 범죄자로 낙인찍혀 처벌과 훈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책감 및 비난으로 인한 공포심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는 성매수자들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성 착취 목적의 대화·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위장 수사 특례 범위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N번방 사건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과 성 착취 목적의 대화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매매 강요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있는 지금, 아동·청

소년이 채팅 어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에 쉽게 노출되고, 성매매로 유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성 착취 목적의 대화·성 착취물·성매매가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방안들이 내실 있게 논의되길 바라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련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폭력과 착취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주고 계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과 모든 활동가분들께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보냅니다. 저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의원 **장혜영**

주제발표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주제발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는 성착취다.’

김수현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는 성착취다.’

김수현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1. 들어가며

십대여성인권센터¹⁾ 법률지원단은 2013년 12월 2일 출범하여 10여 년간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연계한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했다.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아청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했다.

본래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성을 사는 범죄²⁾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짓고 이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해왔다.

위와 같은 법제 하에서 성범죄자들은 학교나 부모, 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너도 처벌받는다 등 보호처분 하는 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피해 신고 자체를 막는 결과가 초래됐고, 아동·청소년을 더욱 심각한 피해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이 마치 대가를 바라고 성매매의 자발적 대상이 된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탓하고 보호자까지도 자신의 자녀를 비난했다.

‘대상아동·청소년’이 존재할 때에도 보호와 재활을 위해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지만 같은 법에서 ‘대상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을 2분화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법정에 세워 사실상 처벌을 해온 결과 성을 사는 범죄의 대상

1)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동법 제2조 제4호) “행위”가 아닌 “범죄”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

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을 수 없던 것이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등 관련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19일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전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도록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본래의 아청법으로는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각성에 기반한 반성적 조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신설></p> <p>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8. 9. (생략)</p> <p>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p> <p>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삭제></p> <p>8. 9. (현행과 같음)</p> <p>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p> <p>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p>

<p>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p>	<p>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p> <p><삭 제></p>
<p>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p> <p>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년법」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삭 제></p>
<p><신 설></p>	<p>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p> <p>④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삭 제〉</p>
-----------------------------------------------------------------------------------------------------------------------------------------------------------------------------------------------------------------------------------------------------------------------------------------------------------------------------------------------------------------------------------------------------------------------------------------------------------------------------------------------------------------------------------------------------------------------------	--------------------------------------------------------------------------------------------------------------------------------------------------------------------------------------------------------------------------------------------------------------------------------------------------------------------------------------------------------------------------------------------------------------------------------------------------------------------------------------------------------------------------------------------------------------------------------------------------------------------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여전히 아첨법이 개정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일부 남성들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로 마치 아동·청소년이 선량한 성인 남성들의 범의를 불러일으킨 잘못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관행대로 성을 사는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거나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성범죄자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단속하는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선처하거나 형사합의를 권하는 등 개정된 법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청법은 개정되었고, 성을 사는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아청법에 근거하여 피해자로 보호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참혹하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아청법 개정 이후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지원한 법률지원 사례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성착취 범죄임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다

가. 문제의식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아청법에 의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아청법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그 죄에 마땅한 처벌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위 통지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상담시설 등과 연계되어 재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동법 제38조).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아청법 개정 이후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아청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이 삭제되어 '피의자'로 조사해 처벌할 필요가 없어졌다고만 인식할 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건

가) 사건의 개요

피해아동은 2020. 12.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로, 트위터(현, 엑스)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이하 '가해자 A')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제안받았다. 피해아동은 A가 알선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했고, A는 성매매하고 온 피해아동에게 잠시 쉬자고

하며 ○모텔로 데려가 피해아동을 간음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편취했다.

A는 피해아동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받지 않자 성매매 알선을 위해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 스터디 카페 등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려웠던 피해아동은 도움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동일 수법으로 범죄를 당한 성인 피해자(이하 '피해자 X')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X는 성매매하기로 하고 A를 만났으나 A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X를 위협해 간음하고, A가 자는 사이 X가 몰래 도망치자 성매매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신고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A의 공갈·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X는 서울○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이하 '피고소인')은 “너도 잘못된 게 있다”, “고소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너도 피해 입으니까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차라리 고소장을 접수하지 말고 아저씨가 겁을 줄게”라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고자 했다. 그럼에도 X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귀가했고, 피고소인은 위 고소장에 기재된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서로 출석하게 하였다.

A는 경찰서 출석 요구에 손가락이 아프다고 일정을 연기하며 X에게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X는 피해아동에 대한 A의 가해 행위도 언급하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였다. 동시에 X는 피고소인에게 ‘미성년자 여자에도 당했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미성년자 여자애랑 같이 경찰서 갈 거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아동의 피해 사실도 미리 알렸다.

피해아동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A를 신고하려고 서울○경찰서로 갔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을 보고 가해자인 A와 분리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미성년자인지 묻고 빈 종이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이 피해를 호소하려고 하자 “너도 돈 받으러 온 거지”, “아니 그러

니까”, “어차피 이런 것으로 신고하려고 온 애들은 성매매 또 해”, “○○○(A) 봤을 때 반성하고 있는 것 같고 무조건 돈 줄 것 같다. 그만해라”라고 하고, A에게는 “나이기도 어린 것이 벌써부터 사기를 치고 다니면 안 된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이것은 범죄다. 미성년자랑도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미성년자랑은 뭐라도 얹히면 안 된다.”라며 합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소인은 서울○경찰서에서 A가 피해아동에게 편취한 성매매 대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X와의 사이에 공갈·협박에 대한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게 하고 “이 일은 끝난 것”이라며 X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쇄하고, A를 입건·조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나) 진행 경과

그러나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으나 성매매 피해아동인지 몰랐고, 단지 A에게 빌려준 돈 수십만 원을 받고자 경찰서에 온 줄 알았다는 터무니 없는 변명을 했다. 본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서는 피고소인이 직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A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A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2023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검찰은 “경찰관이 다소 업무를 만연하게 한 것이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고소인이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탓에 피해아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에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 A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A는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 상습범으로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무려 12명이다. 서울○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 A는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A는 피고소인인 경찰이 나서서 미성년자 피해아동 사건을 알아서 무마해주자 3일 후 같은 수법으로 만 17세의 또 다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 A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은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여성청소년과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경기○경찰서, ○검찰청, ○가정법원 소년 사건

가) 사건의 개요

경기○경찰서 수사관은 2021년경 그동안 해왔던 수사 관행대로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던 중 채팅앱에 "지금바로차간단"이라는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피해아동을 발견했다. 당시 피해아동은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이를 본 수사관은 피해아동에게 성매수남인 것처럼 연락을 하고 피해아동을 만나러 왔으며 피해아동을 발견한 당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피해아동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이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2022년 4월경 피해아동에게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다.

나) 진행 경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2년 3월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경기) '모아'로부터 위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기관이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방식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가담자로 인식하여 피의자로 조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2022년 4월경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

고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가정법원 소년부는 항고가 제기된 후인 2022년 6월경 피해아동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처분을 명한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원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였다. 같은 해 7월, 항고법원은 원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불복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유로 항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도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하였다.

3) ○지방법원 ○지원 사건

가)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각자 성매매를 할 의도로 2022. 5. 하순에서 6.초순까지 사이경 SNS를 통해 ‘강릉’, ‘조건(조건만남)’ 등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물색하여, 그 무렵 SNS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아동(당시 11세)과 피해아동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당시 11세)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자 유인한 방법]

“4만원 출까? 그럼 섹스할래?”, “4만원에 할래?”
“섹스하고 싶다길래 하려고 했었는데, 돈 받고 한다고 그러기에”, “섹스하고 싶으면 얘기해”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 친구도 같이 하자”
“성관계를 하면 전자담배(기기)를 구입하여 주겠다”
“2회 성관계를 하기로 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여 주겠다”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

나) 진행 경과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피고인 1명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신의 거주지, 승용차, 심지어 무인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거나 수차례 간음한 피고인들 5명에 대하여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공판검사는 피고인 중 피해아동을 3회 간음하고, 같은 학교 친구까지 데려오게 해 1회 간음한 것도 모자라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도 무시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15년을 각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전부 실형을 면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시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가운데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년 1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아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여전히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다. 위 1) 사건은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다. 2) 사건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어이 처벌하고자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혐의로 아동·청소년을 입건하는 등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사법부 역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을 소년부로 송치하였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아청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였으므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기회에 재판부가 나서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여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원결정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해 다룰 기회를 차단해 버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수사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수사하여 기소하더라도 3) 사건과 같이 사법부에서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대가를 받고 성을 사고팔기를 동의했다고,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하여 선처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아청법 제13조 제3항을 보면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권유, 유인한 경우 모두 기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감형한 것은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위해 법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상에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범죄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용돈이나 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유인하여 사진·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여 성관계에 이르는 등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그루밍 범행 수법으로 진화과정을 거쳐왔다.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성착취 범죄인 것임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나. 성착취 범행수법으로서의 '성매매'

1) 사례 1 _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해아동은 학교 친구를 통해 트위터 계정에 '섹트'라는 해시태그를 하고 라인 아이디를 게시하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라인으로 대화를 걸고, 돈이나 기프티콘을 보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아동은 위 사실을 알고 호기심에 위 해시태그와 함께 일상사진을 올리거나 라인 아이디를 쓴 게시물을 트위터에 게시하게 되었다.

가해자 A는 피해아동의 트위터 닉네임이 'OO(과자이름)'인 것에 착안하여 "OO(과자이름) 좋아해요? 선물드리고 싶은데요"라고 하며 OO(과자이름) 기프티콘을 전 송하고, 피해아동이 트위터에 '아 OO(음식이름) 먹고 싶다 #섹트'라고 게시글을 올리자 자기 전까지 자신과 놀아주는 조건이라며 OO(음식이름) 모바일 금액권을 전 송했다.

가해자 B는 '생리 중'이라는 피해아동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초콜릿, 껌질팩 기프티콘을 전 송했다.

가해자 C는 피해아동에게 대화를 시작한 날부터 거의 매일 자신의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하고, “라인 영통 맞자위얼마줄까”, “간단하게 사진 하까”, “오늘은 영상 못 찍어주니”, “보내죠”, “빨리 찍어봐”, “영상 찌거죠바”, “밑에도 만지는 거 찍어죠 발정난 14녀 걸레보지도 찍어 딸칠라면 길게 좀 찍어죠”, “진짜 오랜만에 좆물 그렇게 질질싼거침이나 계속 질질삐어 마지막엔 팔팔 뽀얏고 중1이라서 더 흥분했나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아동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자 8차례에 걸쳐 52,000원을 피해아동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켰다.

사례 1의 경우, 피해아동은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나 기프트콘을 준다는 호기심에 #섹트, #여중딩 해시태그를 달아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을 뿐인데 한 달간 피해아동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무려 600명에 이른다. 그중 피해아동에게 돈이나 기프트콘 등 대가를 제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청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성착취 목적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은 “맨 처음 연락이 왔던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나쁜 사람들 같지 않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부 몸 사진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사례 2 _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해아동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가해자 D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가해자 D는 피해아동과 단둘이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아동의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가해자 D는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피해아동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아동에게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관심을 가져 주었고,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이어서 ‘현질(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모바일 게임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현질 하고 싶다”, “기프트카드 갖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해자 D는 어느 날 갑자기 피해아동에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몸 사진을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얼굴 사진을 요구하였다. 가해자 D는 먼저 얼굴 사진과 같은 수위가 낮은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일단 피해아동이 거부감 없이 응하게 한 다음 점차 수위를 높여 몸 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아동은 “그거 좀 나중에 보내면 안돼?”, “나 좀 보내기 싫은데”라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가해자 D는 피해아동이 갖고 싶었던 15,000원권 기프트카드를 사주겠다며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아동은 가해자 D가 왜 자신의 몸이 궁금한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가해자 D와 연락을 지속하고 싶은데 가해자 D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가해자 D가 화를 내거나 가해자 D와의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 ‘갖고 싶었던 기프트카드를 준다고 하니 몸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니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가해자 D의 요구대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사례 2의 경우, 피해아동은 당시 알고 지냈던 가해자에 대하여 “저와 가장 연락을 많이 하면서 저에게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어 친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당시 가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는 일을 크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 몸 사진을 보내는 것이 싫은 마음보다 계속 연락을 이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가해자는 평소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그로 인해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피해아동이 먼저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가해자를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아동은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믿었던 가해자가 강제로 성기 삽입행위를 계속하여 무서웠고 피해아동은 이러한 성행위를 또 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가해자와 헤어지자마자 가해자를 차단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약 2년 만에 갑자기 피해아동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낸 다음 피해아동에게 “난 솔직히 너 연락 안됐을 때 1년 동안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참고 기다릴까 하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말도 없이 차단 박아 놓고 그러는 게 맞아? 난 멧도 모르고 계속 기다렸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아동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꾸짖으며 피해아동을 위축시키고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은 “정말 내가 잘못된

게 맞고 다시 한 번 사과할게”, “대화로 해결했어야 하는 일인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자신이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님에도 가해자에게 거듭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피해아동에게 “전처럼 사진은 못해주려나”, “몸사 좀 해죠”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요구하고, 피해아동이 성착취물 제작을 꺼려하자 그 전과 같이 먼저 얼굴 사진과 같은 수위가 낮은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하여 일단 피해아동이 거부감 없이 응하게 한 다음 “뭔가 좀 더 어른스러워졌어”라고 피해아동을 칭찬하고, “나 갑자기 너 가슴 크기 궁금해졌어”, “보지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손가락은 몇 개 들어가”라고 하며 점차 수위를 높여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나만 특별히 해줘!”, “1년이나 찾아 헤맸는데”, “1년 세월이 짧은 줄 아나”, “적어도 1년 팀 동안 못했던 거 내년까지 하루에 못해도 사진 2장 아님 영상 받을거야”라고 피해아동의 잘못을 언급하고 미안한 심리를 자극함과 동시에 “숙제여도 내가 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줄게. 내가 직접 만든 요리 또 애니 굿즈라든가 등등 필요하면 타블렛도 가능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아동은 “저도 그때 더 이상 몸 사진을 보내지 않고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지미 있었어요. ... 제가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제가 안 그래도 가해자를 차단을 했던 상태였고, 좀 저한테 화를 낼 수 있겠다, 거절을 하면. 차단을 했던 걸 무기로 들고 오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몸 사진을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사례 3 _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해아동은 심심해서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였다. 랜덤채팅 앱에서 매칭된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남성은 아는 지인이라고 하며 피해아동에게 또래 언니를 소개해주었다. **피해아동은 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고,** 언니는 피해아동에게 조건만남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 언니는 피해아동에게 조건만남을 할 동안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아동이 망을 봐주게 되었고, **이후 피해아동에게 둘이 같이 조건만남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여 조건만남을 처음하게 되었다.**

피해아동은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되면서 집을 나와 원룸에서 같이 살았는데(월세는 피해아동의 할머니가 지급) 각자 100만 원가량 게임 현질을 하고, 30만 원 상당의 네일아트 재료를 사고, 그 외 배달 음식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연체금이 총 600만 원이었다.

피해아동의 남자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 E를 피해 아동과 지내던 원룸으로 데려왔고, 가해자 E는 그날부터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당시 가해자 E는 평소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의 남자친구를 수시로 때리고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가해자 E는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아동이 조건만남을 해왔던 사실을 알고 피해아동에게 “내가 남자친구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것이 있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가해자 E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즐톡’, ‘앙톡’ 등 랜덤채팅 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성매수남과 채팅을 하며 **1회당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간 매일 하루 평균 약 3회씩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가해자 E는 피해아동으로부터 그 대가를 모두 받아 가져갔다.

사례 3의 경우, 피해아동은 우연히 들어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친한 언니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게 되었고, 결국 성매매에 알선되었는데 피해아동은 알선자들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성매수남으로 위장한 경찰이 찾아와 발견되기 전까지 알선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다.

피해아동은 가해자에게 자신이 조건만남을 통해 번 돈을 왜 주지 않냐고 말해본 적이 없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어차피 안 줄 거 아니까 말해본 적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누구도 제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 가지고 적응된 상태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시사점

아청법에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규정에서 확인된다.

① 2020. 6. 2. 시행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동법 제2조 제4호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같은 조 제4호 다목은 그 행위 태양 중 하나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피해아동에게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할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동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부탁하여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요청'이나 '부탁'에 응하여 그에 따라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과정 그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② 2021. 9. 24. 시행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루밍이란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자 하는 가해자가 표적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동조, 칭찬, 선물 등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이들은 성적 착취를 염두해 두고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우선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학습시킨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을 위한 유도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③ 그럼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아동들이 대가를 받고 성을 사고팔기에 동의했다고, 피해아동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성범죄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하여 선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 가해자들이 돈이나 기프트콘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면서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공략해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과 2) 한번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아동·청소년은 약속대로 돈을 받거나 갖고 싶었던 것을 얻었으니 자신들에게도 나쁜 게 없다고 인식하고 친구에게 소개하거나 거둬 범죄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이 강제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특성이 드러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아청법에서 '성착취'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과정 자체나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해자들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성매매 방식(동법 제2조 제4호)을 범행 수법으로 하고 있다면 아청법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성착취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성착취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판단의 관심사로 보지 않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발달과 성장'에 침해 내지 위해를 끼친 점,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성적 착취 목적을 가진 성매수남이 라포를 형성하려는 듯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선물이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유인, 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성을 사는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사건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라거나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시각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조차 아동·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여전히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결국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로 유인하여 성착취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성착취 용어로 바꾸어야 하며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구분할 이유가 없이 전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3. 마치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청법이 개정된 후 3년 동안의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검·경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로 용어 변경

성매매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라는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착취 범죄라는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용어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삼아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 정부와 의회는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로 교체하여 왔다. 캐나다에서도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⁴⁾.

2) 수사기관 대상 교육과 이의제기 창구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데, 수사기관이 아마추어라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아청법 개정 사실도 모르고 아동·청소년에게 “너도 성매매를 했으니 너도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나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피해자로 보지 않거나 “왜 성적인 대화를 지속했는지”라는 등 피해자를 탓하거나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4) 조진경 외(2017),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간혹 피해아동·청소년이 안타까운 마음에 조연을 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을 꾸짖거나 호통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을 탓하는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이 수사관의 본심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바라보고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청소년이나 신뢰관계인 등에 의한 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3) 경찰 직제 변경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주는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에서 시작해 성착취물 제작, 오프라인으로 유인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 등 범죄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업소 단속은 생활안전과, 성매매 수사는 지능수사과,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은 사이버수사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력 등은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각기 따로 분리하여 수사하고 있어 통합적 수사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사건은 각 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며 다른 과로 사건을 미루려고 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하나의 과에서 전부를 수사하는 때에도 기존에 수사하던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의 개정 사실이나 전형적인 범행 수법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수사기관과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수사기관과의 핫라인을 운영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지원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핫라인 운영의 핵심은 피해아동·청소년 발견시 전문상담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담한 후 필요에 따라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하고, 조사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은 핫라인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것을 번거롭다고 여겨 조사를 다 마치고 형식적으로 명단만 통지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은 발견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고, 상담원이 도착한 후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수시로 간담회, 피해사례 교육 등을

요청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5) 적극적인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IT 기술을 매개로 한 성착취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를 조장,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인 사이트나 랜덤채팅 앱, 인터넷 개인방송, SNS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가입 연령을 규제하는 법도 마땅치 않아 성인들은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 대화를 즐기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받는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것과 전혀 관련 없는 글을 게시해도 수많은 성매매 제안·권유 메시지를 받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기지 않는데,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거절하여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연인관계를 권유하며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 요구를 들어주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끈질기게 대화를 걸어 조건만남 등 성매매로 유인한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전혀 없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조건만남 등을 제안·권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이므로 이러한 대화 역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여 위장수사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성매수남'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청법 개정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여 검거한다면 그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경고의 신호가 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

사법부의 판단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현저히 기울어져 있다. 앞선 사례 3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은 알선영업행위 외에 위계등간음, 강요행위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받았다. 피해아동이 하루 평균 3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 당하게 되었던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에 가담한 성매수남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은 성착취 범죄의 공범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범죄자들은 특정이 어려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신고 가능

성이 낮고,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 방식을 취한다면 자신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욕망이 결코 우리 사회에 다시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제 1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발제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전제로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전제로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 III. 현행 법률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 IV. 맺으며

국문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와 관련된 법률개정이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역시 성착취의 피해자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규정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와 ‘성범죄’를 구별하는 대신 이를 모두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규율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율하여 성착취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들어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처벌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내세웠다.¹⁾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²⁾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로 나누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고,³⁾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한 뒤 그 소지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였다.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문제화되기 전부터 심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사실을 실제 보고 들어왔던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같은 여성·시민·사회·아동·청소년 지원단체의 끊임없는 개정 입법 노력이 이미 쌓여 있었고,⁵⁾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배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의 문제로 인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판단 능력으로 인해 소위 '자발적' 성매매 행위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점이나,⁶⁾ 2020. 5. 이후 이루어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구분지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와 관련

1) 최준혁,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7.) 178면 참조.
 2)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3)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4)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5) 조진경,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개선 방안",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11.) 41면 참조.
 6) 안경옥·김희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21. 12.) 184면 참조.

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역시 성착취의 피해자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현행 법률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1.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논의의 필요성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논함에 앞서 이후 진행될 논의에서 언급될 ‘아동·청소년 성착취’⁷⁾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어떠한 개념을 정의하는 이유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며, 정의규범을 통해 일상언어적인 법률개념을 명확히 하면 자동적으로 규범의 적용범위도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나. 우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적 착취’ 등의 개념

성착취 혹은 성적 착취라는 용어가 우리 법률에 나타나는 것은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고, 성착취와 비슷한 성적 학대행위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있다.⁹⁾ 우리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성적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에서도 ‘성적 착취’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나타나는 ‘성착취’는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사실 해당 규정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이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성착취’의 개념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2019.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성착취’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http://www.mofa.go.jp/files/000468434.pdf>), 2019. 2. 2023. 11. 25. 검색], 2020. 6.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개정한 바 있다.

8) Ruthers/Fischer/Birk, Rechtstheorie mit Juristischer Methodenlehre, 11. Aufl., C.H.Beck 2020, 5/168, 195.; 재인용, 최진혁, 앞의 논문, 181면 주12 참조.

9) 최진혁, 앞의 논문 181면 참조.

대하여는 법률에 따로 확인되는 바가 없다. 당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제·개정이유에 따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라고 개정이유에 대하여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그러면 이때의 '성착취'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¹⁰⁾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를 통해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되는 우리 법률에서는 '성착취'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고, '성착취' 혹은 '성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의미 역시 개별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착취' 용어 사용과 그 의미 해석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공백으로 인해 마련된 각 시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 2조 제2호의 정의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에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

또한, 서울특별시 외에도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2023. 2. 23. 제정),¹²⁾ 전라남도(2023. 11. 2. 제정),¹³⁾ 제주특별자치도(2023. 11. 20. 제정)¹⁴⁾가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10)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1)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469호, 2022. 10. 17. 제정]
 12)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054호, 2023. 2. 23., 제정]
 13)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5861호, 2023. 11. 2., 제정]
 1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71호, 2023. 11. 20., 제정]

다. 검토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을 논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정의규정과 비교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행위’라고 규정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의 경우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법률이 처벌법규라는 점과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확장된 정의규정이 가져올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법」상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보호법익에 관한 한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¹⁵⁾ 하는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착취’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아동·청소년의 성의 온전한 발달과 성장’으로 보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외부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 관계없이,¹⁶⁾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하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개념 정의하고,¹⁷⁾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구성하면 앞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 김대휘·김신, 「주석형법 (각칙 4)」,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0.) 315면 참조.

16)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성범죄자가 친근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을 길들인 이후 범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그 관계를 연인관계로 착각하거나, 성범죄자를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조진경,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동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0.12.) 74면 참조.

17) 「청소년성보호법」 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는 ‘III. 2.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규정 도입’에서 이어 논의한다.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 등을 받았던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문제점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피해자로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마저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위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루밍 수법의 특징상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¹⁸⁾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이 이용하는 그루밍이란 친근할 말투, 칭찬하기, 선물 사주기, 용돈 주기, 밥 같이 먹기, 영화 같이 보기, 나쁜 짓 허용하기, 놀러 가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길들여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장악한 후 범죄에 나아가는 것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연인관계로 보이기도 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¹⁹⁾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가장 심화 단계는 성폭력 혹은 성매매로 나아가는 것으로,²⁰⁾ 그루밍 수법의 친해지기 단계를 통해 용돈을 받거나 선물, 밥을 같이 먹는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심각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강제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아동·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불안한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놓여있고, 이러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성매수자들과의 성적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2016.부터 2021.까지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의료지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질병코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²¹⁾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파악된 경우에서도 특기할 만한 점은 성폭력에 노출되어 외

18) 조진경, 앞의 논문(주 16), 73-74면 참조.

19) 조진경, 앞의 논문(주 16), 74면 참조.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실시한 '2019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적유인 및 성매매와 관련하여 조사기준일 전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체 아동·청소년 비율의 11.1% 였으며, 이것이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한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또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만나자는 유인을 받았거나 실제 유인자를 만나는 등의 성매수 피해 위험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에 달하였다. 전윤정,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9.) 7면 참조.

21) 십대여성인권센터·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성매매는 '성착취'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2022. 9. 5.) 자료집, 64-67면 참조.

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자신의 의자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반복되는 외상을 경험하면서 마치 외상에 중독된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²²⁾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지는 특성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성 매수자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들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유기에 대한 불안으로 학대와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주변인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비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²³⁾

결국, 아동·청소년의 발달 과정상의 미성숙한 특성과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특성이 합쳐져,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규정과 같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분리시켜 구별하고 있는 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있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²⁴⁾

이에 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I. 현행 법률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는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제3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구별하고, 제6호 ‘피해아동·청소년’와 제6호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구별하였던 것은 처음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던 2000. 2. 이후 수년 뒤인 2007. 8. 전부개정²⁵⁾을 하면서 구별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당시 개정 취지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

22) 십대여성인권센터·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앞의 자료집, 67면 참조.

23) 십대여성인권센터·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앞의 자료집, 67면 참조.

24) 조진경, 앞의 논문(주 16), 78면 참조.

25)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8634호, 2007. 8.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 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외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구별하는 취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되는 바는 없다. 그 이후 「청소년성보호법」을 전부개정²⁶⁾하면서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규정도 삭제하여, 현행법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따로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후, 국회는 2020. 5.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²⁷⁾을 통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였고, 그 개정 취지에 대하여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고,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 과정 혹은 상담 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⁸⁾

이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의 구별로 인해,²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물론 수사특례 등을 통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나, 전부 준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온전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20. 5.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동법 제2조 제6호 '피해아동·청소년'과 별도로 제6호 의2를 통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굳이 따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개정 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되던 피해자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호하지 않으면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루어진 구분이었지만, 현재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26)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전부개정]

27)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8)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29)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구별에 있어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동법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를 적용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아 감경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감경규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성착취 피해자들과는 다른 피해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위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져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규정과 같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분리해 인식하고 있는 한, 피해자 보호에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련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려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규정(동법 제2조 제2호)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구별 및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별은 ‘성매매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와 구별하여 심각한 피해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이 포함될 것처럼 평가될 수 있다’ 라는 비판이 있다.³⁰⁾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타당한 비판으로, 이러한 구별로 인해 결국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에 있어 개념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의규범을 통해 법률개념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적용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성매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실제로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상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취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 과도 구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³¹⁾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에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개념 정의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구성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공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0) 안경옥·김희정, 앞의 논문, 184면 참조.

31)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에 대하여는 ‘II, 1.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부분의 논의 참조.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정(동법 제2조 제2호)의 개정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규정(동법 제2조 제3호)의 삭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해당하는 죄를 ‘동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³²⁾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³³⁾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³⁴⁾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³⁵⁾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동법 제11조에서 제15조의2까지³⁶⁾를 제외한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만 위와 같이 ‘성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구별을 하다 보니,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준용하는데,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폭력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폭력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 3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 예비, 음모,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3)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 미수범
- 34)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제342조 미수범(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
- 35)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6)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는 것인데, ‘성폭력 범죄’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폭력 범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등에 관한 해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상의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일부³⁷⁾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넓은 개념인데,³⁸⁾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입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폭력 범죄보다 더 좁은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구별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떨어뜨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준용하면서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범죄’를 의미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어졌던 것이다.³⁹⁾

무엇보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 관련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별이라 그 근거 역시 빈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구별하는 것을 폐기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성범죄’를 ‘성착취’로 개정하고, 동법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규정(동법 제2조 제6호의2)의 삭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

37)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38) 안경옥·김희정, 앞의 논문, 183면 참조.

39)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기본법인 형법과 수많은 형사특별법 규정을 두고 있고, 그동안 새로운 성폭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하에 특별법을 활용하다 보니 성폭력 관련 법률 등의 체계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고 김정연,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법조협회 (2019.8.) 287면 이하;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20.12.) 30면 이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상에서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개선점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형사법과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 관련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6호의2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구별은 2020. 5.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면서, 개정 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되던 피해자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호하지 않으면 여전히 보호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루어진 구분이었지만, 현재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과는 다른 피해자로 취급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위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져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구분하여, 각종 수사 특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으로 인해 몇몇 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자치법규의 적용범위 한계상 이를 각 시의 자치법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현행과 같이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두 '피해아동·청소년'로 규율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6호의2를 삭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는 모두 동법 제2조 제6호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라. 신구조문대비표

이상에서 제안한 바를 신구조문대비표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삭제〉
3의2. (생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6의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삭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IV. 맺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동이 용이해지는 환경 속에서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⁴⁰⁾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가장 심화 단계는 성폭력 혹은 성매매로 나아가는 것으로, 성매수·성매매 강요·성매매 알선 등에서 피해자 연령은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⁴¹⁾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발달 과정상의 미성숙한 특성과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특성이 합쳐져,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다가, 2020. 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

40) 여성가족부·경찰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2021. 3. 31.) 자료집, 14면 참조.

41) 김성현, 석희진, 김리원, 이은정, 서연주, 이수정,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11.) 165면 참조.

년'으로 통칭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의 문제로 인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2조 제2호와 제3호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구별하고, 제2조 제6호와 제6호의2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구별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으로 인해 몇몇 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적용범위 한계상을 각 시의 자치법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정의 규정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성범죄'를 구별하는 대신 이를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로 규율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율하여 성착취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성현, 석희진, 김리원, 이은정, 서연주, 이수정,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11.)
- 김정연,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2019.8.)
-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20.12.)
- _____.김희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21. 12.)
- 조진경,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동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0.12.)
- _____,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개선 방안”, 디지털성범죄 수사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11.)
- 전윤정,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9.)
- 최준혁,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7.)

2. 보고서 및 단행본

- 김대휘·김신, 「주석형법 (각칙 4)」,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0.
- 여성가족부·경찰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2021. 3. 31. 자료집
- 십대여성인권센터·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성매매는 ‘성착취’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의 료지원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2022. 9. 5. 자료집

3. 기타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19. 2.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토론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성착취’ 규정에 관한 검토 및 제언

조윤희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성착취' 규정에 관한 검토 및 제언

조윤희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착취' 규정

기존 우리 법률에서 '성착취'에 관한 내용은 형법 제288조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약취, 유인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 내용이 있으나, 성착취의 정의규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작·배포등 처벌규정이 2020. 5. 1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규정 및 이에 따른 제작·배포등 처벌규정(위 법 제11조)으로 개정되었다(위 법 제2조 제5호, 제11조 참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양상은 피해자들, 특히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촬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판매, 유포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었는바, 그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 이로써 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의안번호 24979,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 5. 20.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위 정의규정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같은 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영상등을 의미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2021. 3. 2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위 법 제15조의2). 이 역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위 법 제13조 내지 제14조)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성적 목적의 유인·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었다.²⁾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 의안 등을 반영한 법안심사소위원회 마련 대안³⁾을 의결하여 그 안이 통과되었다.⁴⁾

2) 의안번호 357, 발의자 권인숙 외 32, 발의연월일 2020. 6. 11.

3) 의안번호 8400,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 2.

4) 위 통과 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위 조항에 따른 성착취 목적 대화는 성폭력·성학대·성착취의 전단계로 평가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같은 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의 처벌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⁵⁾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개념 규정 부재의 문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등을 처벌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었으나, 정작 ‘성착취’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착취’ 규정을 도입하면서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념상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축소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는 위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8. 17. 선고 2023노26 판결 참조).

5)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0. 9.)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목<각주3>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영상물의 표현 내용, 즉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성교 행위(가.목), 유사 성교 행위(나.목), 자위 행위(라.목)'에는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결국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제4호 다.목)'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면, 위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밖의 성적 행위'도 음란한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이어야 하므로,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면서 해당 신체부위가 노출된 촬영물에 대하여 법원은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위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소비, 착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결과물인 것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촬영은 곧 아동·성착취, 성폭력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등 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발제문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는 그 범죄로 나아가기 위한 그루밍 수법에 따른 피해 양상에 있어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신뢰관계를 쌓아 성적 관계를 맺으며, 이것이 성적 침해행위임과 동시에 그에 관한 대가성이 있는 등), 이것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착취에 대한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법령은 그 개념규정의 부재 내지는 개념의 불명료함으로 인하여 위 판례에서 보듯이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즉 성풍속에 관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고, 이로써 처벌공백을 야기하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성매매를 아우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에 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3. ‘성착취’ 개념 규정에 관한 제언

‘성착취’의 개념 규정이 개별 법률에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에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있다(발제문제4면 참조).

한편, 국제적인 ‘성착취’ 개념을 살펴보면, UN사무총장 고시⁶⁾에서 성착취는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취약성, 권력 차이, 또는 신뢰를 실제로 남용하거나 남용하려고 시도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국가의 법적 성년의 나이와 무관하게 만 18세 이하의 사람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아동성착취’라 함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⁷⁾

국제 아동 성매매 근절단체인 ECPAT International의 관계기관합동실무단은 2016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용어에 대한 지침서(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를 발간하였는데(일명 ‘룩셈부르크 지침’), 룩셈부르크 지침에서는 ‘대가’의 유무로 아동성착취와 아동성학대를 구분하면서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⁸⁾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은 아동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성학대의 많은 경우 아동을 침묵시키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애정을 주는 등의 대가나 아동에게 이득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며, 아동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학대하려는 행위의 모든 피해자는 아동성착취 피해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지침에서는 아동성학대와 아동성착취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다고 보았다(ECPAT, 2016:25). 아동의 연령은 룩셈부르크 지침 역시 UN 등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한다(ECPAT, 2016:6).⁹⁾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회의 협약(Con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2007)’(일명 ‘란사로테 협약’)에서는 아동성학대,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는 명시하였으나 아동성착취에 대한 정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동 성학대와 성착취는 아동성학대(제18조), 아동 성매매(제19조), 아동포르노그래피

6) SGB:Secretary-General’s Bulletin, 2003:1

7) 정연주,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여성연구, Vol.113 No.2 (2022)

8) 단지 금전적인 것이 아닌 숙박, 음식, 선물 등이 포함되고 이것은 제3자, 가해자, 아동 본인이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9) 정연주, 앞의 논문

촬영·유포·소지(제 20조),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도록 하는 행위(제21조), 아동에게 다른 이의 성적 학대 또는 성적 행위를 보도록 하는 행위(제22조),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제23조), 그리고 앞서 열거한 행위를 돕거나 시도하는 행위(제24조)들이 포함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아동성착취가 아동성학대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견지이다.¹⁰⁾

종합하면, 성착취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서울시 조례, UN 사무총장 고시), 대가성 유무로 성착취와 성학대(내지는 성폭력)을 구분하는 관점이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성착취와 성학대가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룩셈부르크 지침, 란사로테 협약). 한편 성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성착취 금지 규정을 두기도 한다(란사로테 협약).

발제문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을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에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동조 제3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구별을 폐기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성착취’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성착취’에 관한 기존의 이해와 국제적으로 개념화된 내용에 부합하며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폭력 피해가 본질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건대 타당하다. 또한 위 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며,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의제강간죄 규정, 만 16세 초과 만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폭행·협박, 위계·위력, 장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등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등을 고려하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학대, 성착취를 일괄하여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포섭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도 있다.

이에 절충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죄(동법 제11조), 아동·청소년매매등죄(동법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동법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동법 제14조) 알선영업행위등(동법 제15조),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죄(동법 제15조의2)를 일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명명,

10) 정연주, 앞의 논문

규정하고, 위 성착취 범죄 피해자를 '피해아동·청소년'(동법 제2조 제6호)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4. 결어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으며, 국제적 기준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성착취로 규율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즉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성착취로 판단되어야 하며, 법문언상으로도 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성착취 목적 대화등 죄와 통일적으로 ‘성착취’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착취 범죄의 판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성적 이용(착취)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구제 및 지원에 있어 기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성범죄) 피해와 달리 규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토론2

이정애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발제 2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발제2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방안

한옥 변호사 (법무법인 일현)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방안

한옥 변호사 (법무법인 일현)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가 2021. 3. 23.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이른바 ‘합정수사’가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위장수사에 관한 일 반규정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¹⁾ 및 **제15조의2²⁾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³⁾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한편, 경찰청에서 2023. 7. 21.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개정안이 시행된 2021. 9. 24.부터 2023. 6. 30.까지의 위장수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대부분의 위장수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⁴⁾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2)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경찰청, 2023. 7. 21.자 보도자료, 「'위장수사' 시행 3년차, 그간의 성과」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 현황 >

※ '21. 9. 24.~'23. 6. 30./수기통계로 변동 가능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제작알선	판매·배포·광고	소지·시청		
전체	350건	41건	274건	8건	8건	19건
	705명(구속 56)	74명(구속 14)	504명(구속 35)	106명(구속 3)	3명(구속 3)	18명(구속 1)
신분 비공개	286건	17건	250건	-	2건	17건
	459명(구속 22)	7명(구속 4)	441명(구속 18)	-	-	11명
신분위장	64건	24건	24건	8건	6건	2건
	246명(구속 34)	67명(구속 10)	63명(구속 17)	106명(구속 3)	3명(구속 3)	7명(구속 1)

※ 위장수사 신청 시의 가장 중한 위반유형을 기준으로 중복 없이 집계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었고, 위장수사의 대상 범죄 중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가장 무거운 범죄라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결과가 전혀 이해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이 의도했던 방향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의 확대 또는 확보(즉, 증거자료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수법, 즉, ‘온라인 그루밍’행위 자체를 원천에 차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위반의 성착취목적대화등죄(이하 ‘성착취목적대화등죄’라 한다)에 대한 위장수사가 약 2년 동안 8건(약 2.3%)에 그쳤다는 것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에 선발된 위장수사관 35명을 대상으로 2022. 7.경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위장수사 시 어려움 및 필요사항, 위장수사 특례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 등 서술식)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의 구성요건 자체가, ①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고, ② 피해자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③ 지속적 및 반복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장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⁵⁾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그루밍 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위장수사를 진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원조교제’, ‘가출청소년의 일탈’과 같은 사회적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를 드러내길 원치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특성상, 그리 용이하지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5) 장나래, 이상진, 2022,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2022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그런데, 피해자를 매개로 하는 함정수사는 위장수사 규정 도입 전에도 사용되던 수사 방법이었고, 더 나아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또는 상대방)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오히려 별건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함정수사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졌는데, 위와 같은 과거의 관행적 수사방식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의 하나의 대안적 수사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수사 방법은 현행법상 모두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참고로, 과거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2. 위장수사 도입 전 수사기관의 관행적 함정수사의 문제점

종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하도록 하고,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의 함정수사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으로 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 자체에 완전히 반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수사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참조), 더 나아가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⁶⁾라는 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수사 방법이며, 현행 위장수사 규정 하에서 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위장수사관의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재차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위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수사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장수사가 명문화되기 전, 수사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성매매수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의 성을 팔고자)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⁷⁾ 위반죄로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성매매수자 및 중간매개자 등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하여 왔고, 자신의 성을 팔고자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그 절차를 달리하지는 아니하였는데, (i) 성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6)

매매처벌법 제정 경과를 보면, 자신의 성을 팔고자 권유, 유인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위 규정 역시 중간매개자의 광고 행위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점, (ii)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하다면, 위 제20조의 다른 각호의 행위와 제3호의 행위는 동질적 내지 동가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비례원칙에 반하는 점, (iii)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구 청소년보호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을 삭제한 이상, 아동·청소년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일 뿐이기에,⁸⁾⁹⁾ 성매매 권유 등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 등의 광고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및 (iv)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위 법률 제17282호의 개정 이유에는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오히려 성매매를 근절한다기보다는 이를 음성화하고, 고착화함으로써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성매매 권유 등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팔기 위하여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처벌될 수 없는 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¹⁰⁾¹¹⁾ 이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목적대화등에 참여하였다고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7)

8) 참고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다목은 청소년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에 한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르면, 위 규정 역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덧붙여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한 경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역시 성착취목적대화등이 아동·청소년에 의하여 개시되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이나 적극성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권유 또는 유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제외에 대한 승낙”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수원가정법원 2022푸3055호 사건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1) 참고로 위 사건의 경우, 항고심 진행 중, 원심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조치처분을 불처분 결정으로 변경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하여,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원심법원의 불처분결정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함정수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되지는 아니하는 이상, 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입건 등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확보하여 가해자 등에 대한 증거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결국, 성착취목적대화등 행위에 대한 위장수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과거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함정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 강제적 협조를 얻기 위한 취지에서의 위장수사나 피해자를 매개로 한 위장수사를 할 수는 없고, 하여서도 아니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바. 성착취목적대화등 행위 등에 대한 위장수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및 위장수사 규정의 신설 경위 및 현행 규정의 예방적 관점 등에서의 문제점

2021. 3. 23.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972호)은, 2021. 2. 18. 기존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0357, 2102677, 2105009, 2106459)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정한 대안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것인데, 일부개정 법률안 4건과 현행법률의 위장수사 일반규정 및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¹²⁾

대표발의	위장수사	그루밍 행위 처벌규정
권인숙 (2100357)	① 대상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체 및 성폭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① 온, 오프라인 불문 ② 성적 목적 권유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제2조 4의2호 신설)을 별도로 두고, 제13조 제2항을 개정 ③ 성적 목적 대화 참여의 경우만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
진선미 (2102677)	① 상범죄 :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제11조), 성범죄목적접촉행위등(제15조의2) 및 성폭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② 신분위장수사 구체적 방법 규정	① 온, 오프라인 불문 ② 그루밍 행위(유인 접촉, 성적 유인·권유 행위로 규정)의 목적 범위를 제2조 제2호 가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목적 범죄 별로 구분하여 법정형의 차등을 둠 ③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
양금희 (2105009)	① 대상범죄 :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제11조) 및 성폭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v 규정 없음
황보승희 (2106459)	v 규정 없음	① 온, 오프라인 불문 ② 그루밍 행위의 목적 범위를 제2조 제2호 가목으로 한정 ③ 심리적 종속 목적 ④ 권유·유인 행위의 상습성, 지속성 요구 ⑤ 행위자를 한정하지 않음

12) 각 개정법률안의 경우, 각 의원원문을 바탕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대표발의	위장수사	그루밍 행위 처벌규정
현행규정	① 대상범죄 :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제11조), 성착취목적대화등(제15조의2)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 이를 “디지털 성범죄”라 정의규정을 둠 ②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구분 ③ 신분위장수사의 방법 구체적 규정	① 온라인 한정 ② 그루밍 행위의 목적 범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성적 착취 목적” 규정하나, 그 정의 규정 없음(단,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목적 요구하지 않음) ③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대화의 경우, <u>지속성 및 반복성 요구</u> ④ 행위자를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

개정 법률안들은 대부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른바 ‘그루밍’으로 시작되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성착취 범죄의 전단계 행위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그루밍 행위’에 대한 위장수사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적인 입장이었기에,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역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위반죄를 위장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게 된 경위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아마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고, 현재 성착취 범행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하여 시작되는 경우로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아니하는 ‘그루밍’ 행위에 의하여 성착취 범행이 시작되는 경우 역시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도 전문위원 박철호는, ① 신분비공개수사는 위장수사 규정 신설과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 ② 위장수사가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할 이유는 특별히 없고, ③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의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이상, 특별히 피해대상을 아동·청소년에 한정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기도 한바,¹³⁾ 현행 법률이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충분한 규정 인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¹⁴⁾¹⁵⁾

13) 박철호, 2021. 2.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3면 내지 4면
 14) 한편, 위 검토보고서 제5면 이하 법무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구별기준이나, 신분위장수사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본 발표문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현행 위장수사 규정이 예방적 관점에서 충분한 것인지에 관하여만 논의하기로 한다.
 15) 다만, 일반 성폭력범죄까지 위장수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에는 위 법률에도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의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므로,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의 대상 범죄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 것은,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나, ① 앞서 위장수사관들의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에, 제25조의2 제2항의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위 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피혐의자를 인지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예방 목적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든다.

나아가, ②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조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¹⁶⁾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4호 각목의 행위의 경우, 그 후 진행된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및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개념인바, 이들 범행에 대한 권유,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위 각 본 범행들에 대한 위장수사, 특히 제25조의2 제2항의 신분위장수사까지 허용한다는 것인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면이 있고,¹⁷⁾¹⁸⁾

③ 덧붙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제15조의2의 “성적 착취”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3조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의 위장수사 대상 범죄에 제13조의 죄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위 제13조 제2항의 신설될 당시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9. 2. 20. 의안번호 1801742)에 기재된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은바, 제13조 제2항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제15조의2 규정과 동일한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¹⁹⁾

16)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의미한다.

17)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유사강간죄 역시 하급심에서는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는 경우도 있는바(수원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1054 판결 등 참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 제2항, 형법 제305조 중 유사강간, 강제추행 부분의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하여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8) 다만, 위 각주 17)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장수사의 대상 범죄를 현행 규정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에 한정하더라도, 단순히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범죄 뿐만 아니라,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권유·유인행위의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상 다음 단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위 제7조나 제13조 등의 죄 역시 대상으로 함이 예방적 관점에서 보다 타당해 보인다.

1. 제안이유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모두 1,102명으로 그 중 92.7% 해당하는 1,022명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상반기 동안 단속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92%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즉,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이른바 “그루밍 법”이라고 하는 성매매 방지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제25조의2 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 및 위장수사 규정 신설 당시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하여는, ① 적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위 제25조의2 제1항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하고 있는 죄 외에도,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8조 제2항, 형법 제305조 중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범하여 지는 것이 가능하며, ③ 정보

19)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위장수사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2021. 2. 26. 십대여성인권센터 의견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 의견서”)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

통신망을 통하여²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법 제13조 제2항)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완전히 포섭된다고 할 것인 이상,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²¹⁾

현행규정	개정안 의견(1)
<p>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p> <p>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p>	<p>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범죄²²⁾²³⁾(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p> <p>〈삭 제〉</p>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장수사의 대상 범죄에 관하여, 권인숙의 대표발의안(의안 번호 2100357) 역시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안 입법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규정하게 된 점 및 아직 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시행된지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대한 위와 같은 대안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제15조의2의 입법취지는

20)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범하여진다.

21) 다만, 위장수사의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다소 의문이 있긴 하나, 위장수사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이 시행된지 2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현행 규정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기로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22)

23) 첫 번째 발제문과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을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로 개정할 경우, 이에 맞추어 이 부분도 함께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정도로라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규정	개정안 의견(2)
<p>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p> <p>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p> <p>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p> <p>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p>	<p>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p> <p>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p> <p>1.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p> <p>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p>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죄에 대한 일반적 장애미수가 성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어, 미수범 규정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할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별도로 서술하기로 한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미수범 규정 도입 방안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0357)의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 위 법률안의 제안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및 유인이 용이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단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그 매체의 특성상 유포 가능성이 크고, 유포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크며, 그러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측면에서, 범죄의 전 단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입법된 것은 분명하고, 위 규정 적용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의 대상범죄에 포함시켰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의 입법적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²⁴⁾

24) 참고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둘 경우, 독일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대한 (i) 성범죄의 준비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 다시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미수범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미 앞당겨진 가벌성을 재차 앞당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과 (ii) 불능미수로서 처벌하는 것 역시 보호법익의 침해 자체를 상정하기

먼저, ① **[제1안]**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22조는 장애미수의 성립이 불가능한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²⁵⁾에 대하여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능미수만을 처벌하기 위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가장 간결한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의 행위 중 제1호의 행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론으로, 위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둘 경우,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는 행위도 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구는 대안 입법과정에서 마련된 것인데, 입법자의 의사는 단순한 1회적 행위는 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으로는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여, 미수범 규정의 신설은 여전히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본 논의가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능미수를 처벌하여 위장수사의 예방적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도 있다.

또한, ② **[제2안]**으로,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성년을 포함한다)”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²⁶⁾ ③ **[제3안]**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처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안경옥, 2020,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사한 취지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입법된 이상, 이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 제15조의2의 죄를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의 위장수사의 대상범죄로까지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자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불능미수 처벌규정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볼 것이고, 오히려 논의의 주안점은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후 입법목적(즉,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적 예방)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 일반적으로,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부작위 자체로 기수로 인정되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의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26) 신상현, 2021,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2호(2021. 06.)

③ 제25조의2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과정에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i) [제2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미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규정된 것인데, 제15조의2 또는 개별 조항에 정의 규정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은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고, (ii) [제3안]의 경우, 위장수사의 과정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의 상호간의 착오 유발로 인한 행위까지는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① 위장수사관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이상, “전2항의 죄를 범한 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독일 형법의 그루밍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²⁷⁾²⁸⁾ 등을 참고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법경찰관리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여 전2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전2항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은

27) 안경옥, 2020,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2020년 독일형법 제176조 아동에 대한 성적 악용〉

- ① 14세 미만의 자(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행위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가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1.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자
 - 2.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 (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해 처벌되는 자는 제외)
 - 3.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서면 (제11조 3항)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a) 행위자나 제3자에게 또는 행위자나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행위자나 제3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수인하도록 할 목적
 - b) 제18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84조b 제3항을 행할 목적
 - 4. 아동에게 음란한 도화나 내용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녹음 내용을 들려주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에 접근하게 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준 경우
- ⑤ 아동에게 제1항부터 제4항의 행위를 제안하거나, 알선을 약속하거나, 타인과 이러한 행위를 약속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⑥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제4호와 제5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항 3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착오로 자신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으나 실패하여 기수가 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28) 참고로, 현행 독일형법 규정은 위 제4항 제4호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제5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현재에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장수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개별 구성요건이 위장수사의 대상범위로 추가될 경우, 개별구성요건 별로 위와 같은 조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③ 나아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하에서는, 위장수사 과정에서의 대상을 오인한 행위의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인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판단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에 개인적인 의견인 [제4안]으로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하기 전까지는 위장 수사 과정에서 위장수사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불능미수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27조 단서 규정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가 목적(또는 의도)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립된 법정형을 두는 방향²⁹⁾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개정안 의견(신설)	
제25조의10(처벌)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목적(또는 의도)한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의10(처벌)	①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개별구성요건 분류1]에서 정한 행위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개별구성요건 분류2]에서 정한 행위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 ⑤ .

덧붙여, (i) 일응 편의상 위 [제4안]을 위장수사 관련 규정과 함께 제25조의10에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이제까지는 전례가 없는 형태의 규정기에, (ii) 제66조의2(벌칙) 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³⁰⁾, (iii) 제25조의2 규정의 표제를

29) 다만, 행위자가 의도한 범행의 죄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상 범죄들을 죄질에 따라 분류하여, 각 분류마다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규정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자의 방안보다,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나, 대상 범죄의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개별 형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제2안]과 동일한 단점이 엮보이긴 한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 특례)”로 바꾸고, 제25조의 2 제4항에 [제4안]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및 (iv) 그 실질적 의미를 고려하여 제 15조의3으로 신설하는 방안³¹⁾ 등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하여 좀 더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거듭 강조하지만, 위장수사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두 가지 입법 목적은,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②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위 두 가지 입법 목적 중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무한한 복제 및 배포 등의 가능성 및 완전한 삭제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단순한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한계 등으로 예방에 보다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이하의 위장 수사 관련 규정 신설 시 그 대상 범위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우선 전제하여야 한다.

물론 위장 수사에 대하여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위법하게 운영될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³²⁾과의 관계상, 주관적 혐의조차 없는 단계에서 적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의 신분위장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거나, 기본권(특히 사생활의 자유) 규정과의 관계상 통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거나 등의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비판이 위장 수사 규정의 신설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비판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위와 같은 비판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시행된 지 2년이 갓 지난, 위장 수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할 단계로 보이고, 그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첫걸음으로 위장 수사 중 확인된 미수범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하나의 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30) 다만, 위 방안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및 제66조의 처벌규정은 일종의 행정형법 규정들로, 제7조 내지 제16조의 처벌규정들과는 법적성질을 다소 달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15조의2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4안] 규정을 청소년성보호법 제6장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다만, 위 방안의 경우, 적어도 앞 부분에 “제25조의2의” 정도는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32)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토론1

토론문

김잔디 교수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토론문

김잔디 교수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본 발표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 및 증거능력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 특례 규정인 위장수사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었다. 대부분의 발제 내용은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발제자의 주장에 관한 의견과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기로 한다.

1. 제15조의2 미수범 제정

발제자는 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 및 위장수사 규정 당시 입법 목적 중 하나인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하여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죄의 피의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동 죄의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어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장수사 규정 신설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단계에서 이를 적발하고, 행위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료된다.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가 미수단계에 이르면 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의 불법과 책임은 기수범보다 적기 때문에 기수범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처벌은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수범 처벌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특정 법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은 범죄 처벌 범위 확대

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루밍 행위의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처벌 규정(「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0) 신설

발제자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입법 방식으로 각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거나, 독립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하기 전까지 위장수사과정에서 위장수사관에게 범하여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정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호법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은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토대로 명확해진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특정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 즉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입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검토가 불가피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법에 ‘성인’인 사법경찰관리를 청소년으로 오인하여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를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토론2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관련 토론문

김도현 경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관련 토론문

김도헌 경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경찰의 성착취 피해 아동 보호 현황

-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무를 생활안전국·수사국에서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했고,
 - 최근에는 성인 성매매 수사 사무도 수사국에서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수사 초기부터 지역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수사 前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사 후엔 여성가족부·지자체에 통지하여 자립·자활 등 추가 지원 연계 중
- 한편 수사 과정에서는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가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경찰관 파견**을 통해 상담·의료·법률·수사 등 원스톱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여기부·경찰·지자체·병원 등 협업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증거 채취, 피해자 조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전국 39개소 중 33개소에 경찰관 160명을 배치하여 지원 기능 및 대상에 따라 위기지원형·통합형·아동형 구분 운영 중이며,

※ '22년 기준 연계·지원 56,571건, 피해자 조사 5,577건 진행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들에게 **아동·장애인 조사기법(NICHD) 교육**을 진행해 △ 인지·소통 능력 부족 △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풍부한 진술을 확보 중

※ 판례에서도 ‘NICHD 조사 기법’ 적용 여부를 피해 진술의 오염 가능성 배제 근거로 삼는 등(서울고등법원 2014노1251) 미성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제고 기여

〈「해바라기센터」 유형〉

구분	명칭	위기지원형	통합형	아동형
	개소(총39)	16개	16개	7개
경찰배치	배치			1개소 배치(분당차병원, 1명), 6개소 미배치(출장 조사)
대상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19세미만 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운영	24시간			09:00~18:00
기능	위기지원(초기상담, 증거채취 등)	위기지원+심리치료 등 장기 지원		심리치료 등 장기지원

- 한편 피해 진술의 타당성·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 조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석·의견서 작성하는 **진술 분석 전문가* 제도를 운용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요 판단 자료로 활용 중

* 아동(13세 미만)·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발달·심리 특성에 따라 조사 시 민간 전문가에게 진술 내용에 대해 타당성과 신빙성 등 의견을 조화하는 제도

-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 **진술 분석 의견서 표준 매뉴얼 작성** △ **전문가 자격 검증** △ **동료 슈퍼바이저 양성** △ **진술 분석 전문가 추가 양성·처우 개선** 등 전문가 역량 강화에 노력 중
-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과오사례를 방지하고자 성매매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 계획 수립·추진('23. 5월)
 - 성매매 피해자 및 성판매자의 권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지 등 제도 개선 △ 성판매자의 인권 보호 및 성매매 피해 식별 교육 강화 등 내용 위주로 수립해 운용 중
- 특히, 성매매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여 자활을 돕고 반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지서류를 보다 간소하게 표준화하는 등 개선하여 운용하고 있음('23. 10. 12.)

□ 성착취 목적 대화죄 수사 현황

- **(수사 현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며('21. 9. 24. 시행)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성착취 목적 대화는 '21. 9월 ~ '23. 9월 간 총 120건이 발생(동 기간 위장 수사 실적은 총 8건(위장 6건, 비공개 2건))

※ △ 성착취 목적 대화는 예비죄의 성격을 지녀 성착취물 제작 등 중한 범죄 발생 시 흡수되는 점 △ 「아동복지법」제71조에 동일·유사한 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법정형도 더 중한 점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23. 1. 18.부터*의 발생 건수(총 50건) 중 피해자는 13세 ~ 15세가 가장 많았고, 피의자는 21세 ~ 30세가 가장 많은 양상을 보임

구 분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피해자 연령	50	-	20	23	7

구 분	계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
피의자 연령	41	5	26	6	3	-	1

* 성착취 목적 대화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상 구분죄명이 존재하지 않아 수기로 통계를 관리해왔으며, 대검찰청에 예규 개정을 요청, 예규가 개정('23. 1. 18. 시행)되어 현재는 시스템으로 통계 관리 중

□ 수사상 애로사항

○ (법리적 한계) 현행법은 경찰이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음

- 성착취목적대화는 가해자로 위장 수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피해자(아동·청소년)로 가장해야 하는데,
- 성인인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을 가장해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대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라는 실제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범(불능미

수)에 해당하여, 처벌이 곤란

- ※ 반면, 성착취물 제작 등 다른 위장 수사 대상 범죄는 대개 수사관이 매수자를 가장하는 것으로 불능미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
- ※ 판례는 성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유흥 주점 실장을 검거한 사안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를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는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 판결(의정부지법 2018노2290 판결)
- 현재는 ①실종 아동·청소년을 발견 후 피해사실 청취 ②공범 검거 ③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한 경우 등,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를 중심으로 위장 수사 진행**
- ※ 수사관이 카카오톡, 랜덤채팅 앱 등 SNS에 대화방 개설, 게시글 게재,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행위 등을 통한 성 착취 목적 대화 위장 수사는 불가

□ 개선 방안

-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법률상 ‘불능미수’ 처벌 규정을 두거나(독일), ‘가공 피해자에 대한 범행 처벌’ 규정을 마련(미국, 호주)해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해 나눈 대화를 처벌 가능**
 - ⇒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실효적인 위장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성인인 대화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

□ 발제문 관련 의견

- 먼저, 경찰의 성착취목적대화죄 등 위장 수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법률 개정 방안을 제언해주신 발제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발제문과 같이, 성착취목적대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가 곤란한 실정으로, 성착취목적대화죄·위장 수사 제도 신설의 취지를 고려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최소한, 제1안과 같이 성착취목적대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정도의 법률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이 경우, 성인인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가장하면서 발생하는 불능

미수를 처벌할 수 있음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비 단계를 처벌하는 성격인 성착취목적대화 재차 미수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서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여짐

○ 제2안·제3안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성인을 포함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임

-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겠으나 발제에 제시된 것과 같이 독일 형법에서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 미국, 호주에서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공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美)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 범죄도 처벌한다

(獨) 아동에 대한 범행이라고 오신하여 실패한 경우 미수를 벌한다

(濠)수신인이 가공의 인물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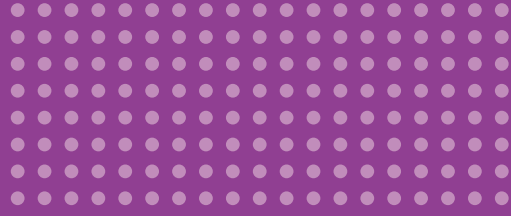
○ 제4안의 경우, 처벌 범위 확대의 위험성과 위장 수사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나, **관련 입법 사례가 없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찰은 성착취목적대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입법적 노력과는 별개로 위장수사관 추가 선발 및 교육, 매뉴얼 개선 추진 등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아무쪼록 추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연번	이름	소속	연번	이름	소속
1	서순성 단장	법무법인 (유)원	27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2	강영인	변호사 강영인 법률사무소	28	이근옥	법무법인 정향
3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29	이기연	법무법인 제이앤
4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30	이보람	
5	김경아		31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6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32	이시정	법률사무소 미소
7	김병희	법률사무소 소도	33	이예지	법률사무소 리앤리
8	김수연	법무법인 린	34	이은솔	
9	김연정		35	이정혜	
10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36	이혜은	법무법인 지평
11	김영주	법률사무소 서담	37	장승주	법무법인 정솔
12	김윤지	법률사무소 온길	38	전기영	
13	김제현	법무법인 온새미로	39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14	김진	사단법인 두루	40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15	김차연	제주 법률사무소 진솔	41	정은혜	
16	김택선	주택도시보증공사	42	정지원	법률사무소 태희
17	김현아	법률사무소 휴먼	43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18	김현정	김앤현 법률사무소	44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19	김희진	변호사 김희진 법률사무소	45	차민정	법무법인 청음
20	나미라		46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21	민동순		47	최석봉	법무법인 세광
22	박숙란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48	최은미	법률사무소 서담
23	박혜정		49	최진원	법률사무소 온길
24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50	추선희	법무법인 한일
25	서미옥	법무법인 건우	51	한옥	법무법인 일현
26	신수경	법률사무소 울다함	52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성매매는
‘성착취’다.”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